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7. 6.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2월 2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3회(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00년 7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제정이유

- 1) 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 2) 주민복지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3) 전동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운영기반 구축
- 4)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운영중단 논란 불식

나. 주요내용

- 1) 주민복지센터
 - 가) 주민복지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함(제4조)
 - 나) 주민복지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함(제6조)
 - 다)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제6조)
 - 라) 복지센터는 동장책임 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제7조, 제10조)
 - 마)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제11조)
 - 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제13조)
 - 사)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제14조)
- 2) 주민복지센터위원회
 - 가)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제15조, 제16조)
 - 나) 주민복지센터위원은 동장이 위촉 - 15인 이상 25인 이내(제17조)
 - 다) 공무원은 주민복지센터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제17조)
 - 라)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근거(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대완)

동 조례(안)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주민복지센터 및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서 제4조에서 주민복지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며,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 문화, 복지 등의 업무기능을, 제7조 운영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원칙이나 외부강사도 가능하며, 제10조는 수강료등 사용료 징수사항, 제11조에서 제14조는 시설이용과 주민참여, 예산범위내 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 지급사항, 제15조·제16조에서는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17조에서 제2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직무와 해촉 등의 사항이므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제정안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제17조의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위원장에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선출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판단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위원회에 “고문”이 없어 고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되 관할구역의 주민대표인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 해촉시 그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어 위원간의 임기가 일정치 않아 통일을 기하고자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1) (안) 제17조(구성 등)제4항에 “위원회 고문 1인을 두되 관할구역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신설하고
- 2) 제4항을 제5항으로
- 3)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고
- 4) (안) 제20조(해촉)제2항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17조(구성)제4항에 “위원회 고문 1인을 두되 관할구역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신설하고
2. “제4항”을 “제5항”으로
3. “제5항”을 “제6항”으로 수정하고
4. (안) 제20조(해촉)제2항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수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3호
----------	------------

제출년월일 : 2000. 7. 1.
제 출 자 : 유남열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1. 위원회에 “고문”이 없어 고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되 관할구역의 주민대표인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2. 위원의 해촉 시에 그 후임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간의 임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통일을 기하고자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안) 제17조(구성 등)제4항에 “위원회 고문 1인을 두되 관할구역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된다”를 신설하고
2. 제4항을 제5항으로
3. 제5항을 제6항으로 수정하고
4. (안) 제20조(해촉)제2항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하고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p> <p>③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p> <p>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p> <p>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7조(구성 등)①.....</p> <p>②.....</p> <p>③.....</p> <p>④위원회 고문 1인을 두되 관할구역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신설)</p> <p>④를 ⑤로</p> <p>⑤를 ⑥으로</p>
<p>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p>②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p>	<p>제20조(해촉)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p>②.....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가) 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 (나) 주민복지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다) 전동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운영기반 구축
- (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운영중단 논란 불식

2. 주요내용

가. 주민복지센터

- (1) 주민복지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함(제4조)
- (2) 주민복지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함(제6조)
- (3)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제6조)
- (4) 복지센터는 동장책임 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제7조, 제10조)
- (5)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제11조)
- (6)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제13조)
- (7)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제14조)

나. 주민복지센터위원회

- (1)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제15조, 제16조)
- (2) 주민복지센터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동장이 위촉(제17조)
- (3) 공무원은 주민복지센터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제17조)
- (4)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시달
(행정13101-76 2000. 1.13)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조치(부족분 추경확보)

라. 제정안 : 별첨

별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와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복지센터

제4조(설치 등) ①복지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복지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복지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①복지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복지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구청장은 복지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복지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복지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복지센터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복지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복지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복지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지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복지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복지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복지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복지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제 15조(설치) 동사무소 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둔다.

제 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복지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복지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복지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